# 『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외화송금서비스』이용약관

#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㈜하나은행 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『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외화송금서비스』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하는 고객 (이하 "이용자"라 합니다)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# 제2조 (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의 범위)

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은행이 발급한 "현금카드", "신용카드"등 현금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제3조 (이용대상거래 및 송금한도)

이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 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한도를 따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
- ① 서비스 이용대상 거래
  - 1. 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송금
  - 2.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
  - 3. 국내이체 송금
  - 4. 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
- ② 송금한도(자동화기기 이체한도의 적용을 받음)
  - 1. 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송금: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하
  - 2.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: 1일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
  - 3. 국내이체 송금: 제한 없음
  - 4. 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:
    - 한도 미등록시: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
    - 한도 등록시: 등록된 한도내 (단, 1일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, 1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)

#### 제4조 (이용자 확인)

이용자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화기기로 입력한 송금자금 출금계좌 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 본인으로 보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 합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이용자 확인 수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 제5조 (송금지시의 처리기준)

이용자는 이용자의 자동화기기에 의한 송금지시 내용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것 (송금거래번호에 의한 송금지시의 경우 당행 거래번호의 송금내용)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지시를 처리합니다.

다만, 송금액 및 송금 사유 등 등록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# 제6조 (서비스 이용,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

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은행에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

# 제7조 (송금정보 등록)

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등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송금에 필요한 송금정보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# 제8조 (송금지시의 취소•변경)

이용자의 송금지시에 의하여 실행된 송금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합니다.

# 제9조 (송금처리결과 통지)

은행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행한 송금의 처리결과를 자동화기기 전표에 인쇄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#### 제10조 (책임)

- ① 은행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 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
- ② 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

#### 제11조(준용 규정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"외환거래 기본약관", "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", "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", "현금카드이용약관", "직불카드회원약관"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.

#### 제12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(준용) 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-약관-제092호 (2023.06.30)